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구밀집지역에 사전투표소 추가설치〉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808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호선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3. 11.
3. 회 부 일 : 2025. 3.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들의 주권 행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를 1개소씩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생활권역이 행정구역과 상이한 지역에서는 사전투표소가 1개로 제한되어 그 효과가 제한되고 있어 국민들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는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특히 혁신도시나 신도시의 경우 많은 인구가 밀집하여 하나의 개별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나, 혁신도시나 신도시 구역이 행정구역상 여러 읍·면·동에 걸쳐 있어 정작 해당 혁신도시나 신도시 내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구분포나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읍·면·동 내에 1개의 사전투표소로는 주민들의 투표 편의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권행사의 편의성을 높이고 투표참여를 더욱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제4호).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생활권이 읍·면·동에 걸쳐 있어 1개소의 사전투표소로는 투표 편의 보장이 어려운 경우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u>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4.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u> -----
<u><신설></u>	가. <u>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u>
<u><신설></u>	나. <u>생활권이 여러 읍·면·동에</u>

	<u>걸쳐 있어 1개소의 사전투표소로는 투표 편의 보장이 어려운 경우</u>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사전투표소를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운영하되,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¹⁾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2013년 재·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래 최근 사전투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생활권역이 행정구역과 상이한 지역에서조차 사전투표소가 1개소로 제한되어 투표편의가 저해되고 있음,

특히, 혁신도시나 신도시처럼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 행정구역상 여러 읍·면·동에 걸쳐 있는 경우, 사전투표소 설치가 제한되어 주민들의 투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1) 「공직선거법」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2. 읍·면·동이 설치·폐지·분할·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
3. 읍·면·동 관할구역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복수의 행정구역에 위치한 혁신도시 및 신도시는 부산혁신도시(부산 영도구·남구·해운대구), 충북혁신도시(충청북도 진천군·음성군), 전북혁신도시(전라북도 전주시·완주군), 광교신도시(경기도 수원시·용인시) 등이 있음.

《 사전투표율의 변화 》

(단위: %)

제20대 국선	제19대 대선	제7회 지선	제21대 국선	제20대 대선	제8회 지선	제22대 국선
12.2	26.1	20.1	26.7	36.9	20.6	31.3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이에 개정안은 생활권이 여러 읍·면·동에 걸쳐 있어 1개소의 사전투표소로는 투표 편의 보장이 어려운 지역에는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투표 편의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현행법은 사전투표소의 추가설치요건 중 하나로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현행 규정으로도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혁신도시나 신도시 등에 사전투표

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임.²⁾

참고로, 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생활권이 여러 읍·면·동에 걸쳐 있는 경우에 사전투표소를 1개소 추가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은 2026년 3억 400만원, 2030년 3억 3,7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8억 200만원(연평균 1억 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304	-	162	-	337	802	160

- 주: 1.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안 제148조)는 재량규정 재정수반요인으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생활권이 여러 읍·면·동으로 구성된 지역은 2025년 현재 10곳(예산·홍성, 목포·무안 등)으로 본 추계에서는 해당 지역에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3. 본 추계는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를 대상으로 하며, 보궐선거는 제외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 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는 선거인의 주소지가 아닌 경우에도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으므로 생활권이 여러 읍·면·동에 걸쳐 있다고 하여 선거인의 투표편의가 저해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전투표는 부재자투표제도를 발전시킨 것으로서 그 의미는 부재자투표에 가까운 점, 선거일 투표 시에는 거주지에서 가까이 설치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안이 현행법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임.

된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는 점, 교통불편지역은 위원회가 투표소까지 차량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6
